「정보원 명시의 원칙」을 생각한다

-코엔사건과 鬼頭 사건을 중심으로-

前澤 猛

일본 요미우리신문사 신문감사위원

「취재원의 비닉」은 신문기자에게 있어 세계공통의 직업윤리이며 이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취재원 비닉」의 원칙이 존중되고 있는 한편 취재원(정보원)이 숨겨진 기사, 다시 말하면 정보의 출처불명기사가 과다하지는 않는지 모르겠다. 발언을 한 사람이나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기사의 범람은 신문(매스컴)의 신뢰실추와 관련이 있지 않겠는지 염려되는 바 있다. 현재 일본의 저널리즘에는 「취재원(정보의 출처)을 차라리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 대담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미국에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코엔사건」과 일본에서 주목되었던 「鬼頭 사건」을 근거로 하여 「정보원 명시의 원칙」을 살펴보기로 한다.

「코엔사건」이 남긴 상처

「코엔사건」은 1982 년 미국미네소타 주지사선거 때 매스컴을 이용한 선거전술과 관련된 사건이며, 일본에서의 鬼頭 사건도 정보조작에 의해 록히드 사건의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던 정치적 모략이었다. 이것들은 다함께 신문이 정보원을 공개한 유사한 사건이다. 코엔사건에 관해서는「타임」지(1988 년 8 월 1 일자) 등에 보도되어 잘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행히도 이 사건에 관계한 신문사 중 하나인 스타 트리뷴지(미네아플리스시)의 사내옴부즈맨인 루이스 겔판드 씨가 동지의 기사 등 상세한 자료를 보내주어 도움이 되었다. 코엔사건은 동지사선거의 투표일 직전 공화당후보의 운동원이었던 PR 전문가이던 코엔씨가 그 지방의 4 명의 기자에게 「민주당의 부지사후보(여성)가 12 년전 상점에서 6 달러 상당의 물건을 훔쳐 유죄를 받은 일이 있다」는 정보를 누설한 것이 발단이 된 사건이다. 이때 코엔씨는 정보원인 동씨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였으며, 기자들은 이에 동의했다. AP 통신과 TV 방송국은 이 약속을 지켰으나, 스타 트리뷴지와 파이오니어 프레스 디스패치지의 편집국 간부들은 「이는 악질적인 선거전술이며 정보원 그 자체가 독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뉴스」라고 판단, 기사속에 코엔씨의 이름을 게재하고 칼럼을 통해 격렬하게 비판했다.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고 그 자신도 광고회사의 중역직을 상실한 코엔씨는 2 개월 후 「신문이 정보원 비닉의 약속을 파기한 것은 <사기적 부실표시>와 (계약위반)」이라고 주장, 양 신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양 신문이 정보원을 공표한 것은 「기자와 정보제공자간의 신뢰관계」보다 「신문에 대한 독자의 신뢰」를 우선한데 불과하다. 그러나 헤네핀군의 주지방법원의 수심은 1988 년 7 월 22 일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양 신문에 20 만 달러의 손해배상과 50 만 달러의 징벌배상지불을 평결(5 대 1)했다. 정보원을 명시하여 제소되었거나,』 그 결과 배상의 지불을 명령 받은 것은 이것이 최초의 케이스이다. 평결이 있은 후 트리뷴지의 맥가이어 편집국장은

「정보제공자의 공표라는 비상수단을 취한 것은 독자에 대한 신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들의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디스패치씨의 휘네건 부발행인은 「신문은 정보제공자를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다. 정확하고 공평한 기사를 정직하게 게재하려고 했을 뿐이다. 배심은 그러한 점에 대해 눈을 돌렸어야 했다」고 논평했다. 양 신문은 항소했는데, 이 재판은 신문이나 기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 하나는 신문과 기자와의 대립이다. 양 신문의 기자는 다같이 법정에서 「정보제공자와의 익명의 약속을 하는 재량은 기자에게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트리뷴지의 스터디번드 기자는 「자신과 정보제공자와의 약속이 회사에 의해 파기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며 나는 내가 쓴 기사에서 이름을 지웠다」고 사내의 불통일을 명백히 했다. 신문은 동일한 재판이 제기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트리뷴지는 실제로 판결직후 이미 인쇄된 일요부록판 60 만부를 회수했다. 그 속에 취재원 비닉의 약속을 파기했을지도 모를 기사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약동이 되어 있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자와 정보원간에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크레이머 편집주간은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대응은 동지가 주장하고 있는 「정보원 공개의 중시」와 상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의 많은 매스컴들은 기본적으로는 양 신문의 자세를 지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취재원의 비닉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공개쪽으로 노력하는 편이 기사의 진실성이 보장되고 독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스컴과 매스컴 법학자들은 판결관이 배심원에게 행하는 설시속에서, 연방수정헌법 제 1 조(표현의 자유의 보장)와 신문의 현실면을 외면하고 사건의 쟁점을 「계약파기」라는 사법상의 문제에 한정시킨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배심원장은 평결후 「저널리즘의 윤리와 실무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정보원의 공개」가 연방수정헌법 제 1 조의 보호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최종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에까지 파고드는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을 매스컴측은 기대하고 있다.

「독자의 신뢰책」가 전체

일본에서 있은 鬼頭 사건은 1976 년 8 월 4 일의 심야, 포시 검찰총장을 가장한 한 남자가 삼목수상에게 전화를 걸어 록히드 사건의 수사상황에 대해 1 시간 가량 통화한 것이 발단. 그 남자는 실은 경도지방법원의 현직재판관인 鬼頭史郞 판사보(당시)로서 수상으로부터 록히드 사건에 얽힌 지휘권 발동의 언질을 받아 그것을 매스컴에 공표하여 내각을 넘어뜨리려고 기도했다. 鬼頭 판사보로부터 정보를 얻고 위험한 모략에 가담하게 될 입장에 처하게 된 우리들(당시 필자는 논설위원) 요미우리신문사측이 진상을 보도하기까지 (동지 10 월 22 일) 2 개월여의 시간이 걸렸던 이유의 하나는 「취재원 비닉의 원칙」의 고랑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 고심했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에서도 코엔사건과 마찬가지로 정보제공자는 동시에 중요한 사건당사자였다. 모략의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서는 鬼頭 판사보의 존재를 숨길 수는 없다. 그러나 鬼頭 판사보를 명시하면 취재원을 공표하는 것이다. 「취재원비닉」의 원칙이 「진실의 보도」 앞을 가로막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정보제공자에게는 그러한 매스컴조작의 계산이 움직이고 있었다. 이러한 딜레마를 피하기

위해 우리들이 취한 길은 鬼頭 판사보를 자수시키는 일이었다. 그렇게 되면 취재원 비닉의 고랑을 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들의 설득으로 鬼頭 판사보는 한때 자수를 각오하고 「고백」성명을 준비했다. 그러다가 금새 그 의사를 철회하고 다시 취재원의 비닉을 강요했다. 요미우리신문사는 이 사건에서는 정보원의 비닉보다는 공개를 우선해야만 한다고 확신하고 있었으나 독자나 매스컴의 이해를 얻어낼 수 있는 전례도 보장도 없었다. 그래서 이러한 확신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매스컴법의 전문가 수 명을 초청, 토의를 계속했다. 그 결과가 150 행(1 행 15 자)이라는 장문의 사의 견해 「취재원은 왜 공개됐는가」에 집약되어 11 월 1 일자 조간의 1 면에 게재되었다. 이러한 사의 견해는 우선 「취재원의 비닉은 신문기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직업윤리며, 이를 지키는 일은 신문기자의 생명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원리원칙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취재원의 비닉」은 신문윤리의 철칙이라는 오랜기간 동안의 공통인식이 있기 때문에 정보원의 신원을 공표하는 데에는 결단이 필요했으며 이를 뒷받침할 이론구축에 고심했던 것이다. 견해의 주요부분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그 기본이념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취재원 비닉의 의무는 취재원과 신문기자간에 신뢰관계가 존재함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1. 정보제공자는 기자에 대해 의도적으로 취재원의 비닉의무를 부과하고 신문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성취하려고 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기자와 정보제공자간에는 취재원 비닉의 전제로서 통상적으로 존재하는 신뢰관계는 없었으며 따라서 비닉의 의무도 없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1. 가령 외관상의 신뢰관계를 존중하여 취재원이면서 동시에 사건의 주역이기도 한 인물에 관한 사실을 숨기고 보도한다면 진실의 보도로부터 멀어지는 결과가 된다.

1.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보도하지 않으면 사건의 진실을 전달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그러한 사실을 숨기는 일은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한다는 보도의 사명에도 반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사실을 전하는 의무」를 우선시켜 감히 취재원의 공개를 포함한 사실의 보도를 결단했다. 요컨대「독자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취재원의 비닉」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코엔사건과 鬼頭 사건은 우연하게도 같은 것을 제소하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다.

취재원 명시의 문제의식

그러나 일본의 저널리즘은 전통적으로 취재원의 「비닉」에는 민감하나 「공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결코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일본신문협회의 「신문윤리강령」(1947 년 7 월 제정, 1955 년 보정)에는 취재원에 관한 아무런 규정도 없다. 취재원에 대해 동협회는 1949 년 6 월 30 일 다음과 같은 성명을 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취재원의 비닉에 약간의 언급을 했을 뿐이다. 「신문의 자유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어떠한 세력에도 강제되지 않고 사실의 보도나 평가를 할 수 있는 자유이다. 둘째, 이러한 목적을 다하기 위해 뉴스의 출처에 접근하여 뉴스를 취재할 수 있는 자유이다. 둘째의 자유속에는 누구에게서 뉴스를 취재했는지를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뉴스출처의 비밀보장의 권리와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세계의 모든 신문인에게 공통되는

윤리이다」이것은 이른 바 「石井기자사건」에서 아사히신문松本지국의 石井 淸기자가 취재원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여 기소되었을 때 나온 성명이다. 따라서 비닉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한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비닉」의 중요성은 가끔 재확인되는 기회가 있었으나 「공개를 직업윤리로서 인지하는 강령이나 성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법제적으로는 일본에 취재원의 비닉이나 공개에 관해 규정한 법률은 없다. 판례로서는 증언거절권이 「민사소송법 제 281 조 1 항 3 호의 <직업의 비밀>에 속한다」고 인정된 케이스가 잘 알려져 있다(북해도신문 도전기자사건, 1980 년 3 월 6 일 대법원 결정) 물론 코엔사건과 같이 정보원 명시의 정당성을 가지고 다툰 재판은 없다. 일본의 일선기자의 직업의식도 지면을 통해보는 한도내에서는 잠재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정보원을 지키는 점에서는 철저한 면이 있다. 그러나 정보원의 명시에 대한 문제의식은 박약한 것 같다.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정보원과의 신뢰관계를 중요시하여 정보원을 밝히지 않는 편이 좋다」고 하는 취재관행이 우선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독자를 초조하게 만들고 매스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견해에는 물론 강한 반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받아들여질 보도예는 매일같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외무성수뇌발언사건」은 어떤가. 이러한 점에 관한 독자와 기자간의 거리를 말해주는 좋은 예가 아닐까. 작년의 6 월 4 일 중국의 등소평 공산당중앙고문이 일본림부의 정책을 강력하게 비난한 데 대해 다음날 5 일의 각지 조간은 「외무성 수뇌가 등씨는 구름 위를 가고 있다'는 등 비판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 동성의 류속겸개 사무차관은 「외무성 수뇌의 발언은 예를 잃은 것이다」라고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동월말 정년을 이유로 퇴직했다. 이에 관한 중국측의 보도, 이를 전송한 공동통신의 기사, 혹은 잡지는 외무성 수뇌가 류속사무차관 본인이 라고 지목하고 있었으나 일본의 신문은 끝까지 익명으로 밀어붙였다. 이 보도에서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당초의 익명보도일 것이다. 외무성 사무차관과 기자클럽 소속의 기자들간의 간담회에서는 「발언자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는다」는 관행(즉 기자와 정보원과의 약속)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정보의 내용은 관행을 지키기에 알맞는 것이었을까. 일반적으로 「고도의 외교상의 정보」는 정보원을 명시하지 않아도 좋다는 불문율이 있다. 그러나 이 뉴스가 과연 그러한 종류의 정보라고 할 수 있을까. 또 타인을 중상 비방하는 발언을 익명으로 공표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저널리스트의 직업윤리이며 상식이 아닐까.

미국의 정보원 공개

끝으로 코엔사건의 배경에 있는 미국의 저널리즘, 특히 「정보원 공개」의 원칙과 실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정보제공자의 신원, 즉 취재원은 가급적 밝힘으로써 기사의 질이 높아지고 신문의 신뢰가 보증된다」고 하는 확신 그리고 「정보원은 공개가 원칙이며 비닉은 예외」라고 하는 원칙은 미국의 저널리즘이 체험한 과거의 정보조작이라든가 오보사건의 반성에 의해 점차 강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워싱턴 포스트지의 여성기자 자네트 쿠크가 「마약중독의 8 세 소년지미」라는 익명정보원을 조작하여 그 보도로 1981 년의 퓰리쳐상을 수상한 후 취소당한 「쿠크사건」도 하나의 큰 계기가 되었다.

포스트지는 그 후 「편집책임자에게 기자로부터 정보원이 누구인지를 들을 권한을 주어 그러한 상태하에서 정보원을 비닉할 의무를 지운다」는 규칙을 마련했다. 동지는 2년후 여성기자 로레타 토파니가 「구치소내의 레이프」로 퓰리쳐상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이 기사는 폭행당한 피해자를 포함한 정보원들로부터 「온 더 레코드J(취재원 명시)의 약속을 받아 철저한 실명보도를 했다. 실은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자스타일북」 (1978년 제정)에도 이미 다음과 같은 원칙이 삽입되어 있다. 「본지는 취재원의 안전이 위협을 받지 않는 한 어떠한 정보도 그 출처를 모두 공표함을 약속한다. 취재원의 비닉에 동의한 경우는 사외에 누설해서는 안된다 기자는 출처가 비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우선 비공개의 조건을 해제 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 그것이 불가능하면 다른 루트를 통해 같은 정보를 입수하도록 진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마저 불가능하다면 공개될 수 있는 취재원 비닉의 취재이유를 상대방에게 구해 그것을 기사에 삽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떤 경우에라도 어떠한 형태로 취재원의 신원을(부서나 지위 등으로)명시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것은 보도하지 않으면 안된다」AP통신가맹편집국장회의 윤리강령(1975년 채택)은 「취재원은 명확한 반대이유가 없는 한 공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취재원의 비닉을 지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되어 있다. 이 원칙은 미국신문편집인협회(ASNE) 강령(1975년 채택)에서는 「취재원의 비닉은 일단 약속한 경우에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키지 않으면 안되므로 경솔하게 약속해서는 안된다. 취재원은 비닉해야만 할 명백하고도 절박한 이유가 없으면 명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표현되고 있다.

문제로 남는 「곤란한 길」

이러한 룰은 명문화되어 있는가 아닌가는 별 문제로 하고 많은 신문사에 공통되고 있다. 뉴스저널지(델라웨어주)의 윤리강령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며 매년 년초에 1페이지의 지면을 할애하여 전문을 독자에게 공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취재원 공개의 원칙은 특히 강조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지와 거의 비슷한 원칙을 공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도 밝히고 있다. 「기자는 취재를 함에 있어 오프 더 레코드 출처비공개, 배경설명, 발표물-각각의 취급상의 상이점을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설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보의 제공자가 누구인지 그 신원을 기자는 편집책임자에 알려주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기사는 채택되지 않는다. 」트리뷴지는 코엔사건에서 패소한 후 「익명의 취재원과 그 비닉에 관한 안내」라는 상세한 규정을 만들어 3주일 후 지면에 공표했다.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기본>

① 익명의 취재원은 중요한 기사에서 어쩔 수 없는 요소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신문이 그것에 지나치게 의지하면 정확성과 공평성을 잃은 저널리즘에 빠질 위험이 크며 신문은 독자의 신뢰를 잃는 결과를 가져온다.

② 본지는 정보가 중요하고 기자와 편집책임자가 다 함께 정확, 공평의 기준을 충족시키고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익명의 성명이나 발언을 쓰지 않는다.

③ 취재원의 비닉은 그것이 완전하게 본지와 독자의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면 약속해서는 안된다 특별한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인정된 약속은 존중한다.

<세칙>
개인이나 단체를 손상시키는 내용의 발언이 익명인 경우 원칙적으로 쓰지 않으며, 편집국장이나 편집주간의 승인이 없으면 절대로 쓸 수 없다. 타인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를 익명으로 취급하는 약속은 미리 편집책임자와 협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경우 그 정보와 함께 정보원의 신원이 중요한 뉴스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정보원과 비닉의 약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기자에게도 없으며, 약속하기 전에 편집책임자의 허가를 필요로 하거나 정보원을 편집책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신문사측의 주장에는 당연히 기자측으로부터 현실적으로 부당하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트리뷴지와 디스패치씨의 기자조합은 「재판이 걸렸을 때 편집책임자가 정보원을 공개할지도 모를 위험이 있는 이상 기자에게는 정보원을 숨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도 좋다」고 성명했다. 코엔사건은 아직도 많은 문제와 여파를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비록 재판에서 패소하여 다액의 배상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다 하더라도 독자의 신뢰에 연결된다고 한다면 감히 「정보원공개」라는 험난한 길을 가려는 미국의 저널리즘은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일본신문협회 발행 「신문연구」 11 월호에서 전재)